

의안번호	2215798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6.3.20.
추계번호	26C7444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위원회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5,440만원, 2031년 440만원 등 5년간 총 7억 7,200만원(연평균 1억 5,44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안 제6조)	150	-	-	-	-	150	30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안 제8조)	4.4	4.4	4.4	4.4	4.4	22	4.4
화장품산업 실태조사 (안 제9조)	300	-	-	300	-	600	120
합 계	454.4	4.4	4.4	304.4	4.4	772	154.4

주: 1.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 (화장품산업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화장품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6조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지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8조 (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19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20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21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 정부는 화장품 품질평가 기반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제품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22조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23조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정부는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13	안 제24조 (화장품기업 등에 대한 포상)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 또는 화장품 연구개발의 촉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5조 (전문인력 양성)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제2항) ○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6조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화장품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재량규정
16	안 제27조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료·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28조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 정부는 화장품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8	안 제29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19	안 제30조 (국제협력)	○ 정부는 화장품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20	안 제31조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21	안 제32조 (중소·중견기업의 우대)	○ 정부는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¹⁾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중 합계획)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7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 행계획)		
3	안 제8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4	안 제9조 (화장품산업 실태조사)		
5	안 제10조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 혁신형 화장품 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 ²⁾
6	안 제16조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 관 지정 등)		○ 현행 「화장품법」에 따른 유관 사업이 이미 수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확대·신설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7	안 제18조 (조세에 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19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9	안 제20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10	안 제21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 현행 「화장품법」에 따른 유관 사업이 이미 수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확대·신설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11	안 제22조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12	안 제23조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3	안 제24조 (화장품기업 등에 대한 포상)		

1) 제정안 재정수반요인별 기존 수행 사업 목록을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다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사업 예산(인증심사 1억 600만원, 인증요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분석 7,200만원,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 및 포상 9,000만원)을 기준으로, 화장품 산업이 제약사업보다 세분화되어 있고 대상 기업군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연 3억 6,000만원이 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4	안 제25조 (전문인력 양성)	×	○ 현행 「화장품법」에 따른 유관 사업이 이미 수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확대·신설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15	안 제26조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16	안 제27조 (화장품 원료·용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7	안 제28조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8	안 제29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현행 「화장품법」에 따른 유관 사업이 이미 수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확대·신설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19	안 제30조 (국제협력)		
20	안 제31조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1	안 제32조 (중소·중견기업의 우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안 제6조), 시행계획(안 제7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안 제8조), 화장품산업 실태조사(안 제9조),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안 제10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요될 것으로 예상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화장품산업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제9조)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 계획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제약산업 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준용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매년 연구용역 및 검토회의비 5,000만원이 소요되며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시행계획)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와 디지털헬스케어 실태조사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연구용역비³⁾를 고려하여 추계 첫 해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첫해인 2027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소요하고, 2030년에 제2차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종합계획·실태조사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안 제6조)	150	-	-	-	-	150	30
화장품산업 실태조사(안 제9조)	300	-	-	300	-	600	120
합계	450	-	-	300	-	750	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의료기기산업 사업체 모집단 8,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실태조사’는 2025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체 모집단 5,000개소를 대상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4년 기준, 화장품 산업 전반(원료, 제조, 책임판매, 유통 등)을 포괄할 경우 전체 사업체는 약 32,000 개소임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으로 하며, 그 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은 위원회 조직,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정원과 회의 횟수 등은 유사사례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를 준용함
-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 (위원 정수) 정원 15인 중 민간위원 11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⁴⁾
 - － (회의 횟수)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2022~2024년 개최 횟수를 준용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2,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안 제8조)	4.4	4.4	4.4	4.4	4.4	22	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4) 정원 중 공무원은 제정안에 따른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1인과 안 제8조제1항제3항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1인으로 총 4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5)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

[참고자료]

[부표 1] 기존 수행 사업과 제정안 재정수반요인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6년 예산	제정안 재정수반요인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지원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수출 국가 다변화 전략 지원, 화장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 축, 인건비 및 경상비)	4,576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안 제26조)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29조) ·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31조)
	· 국내 K-뷰티 체험 홍보관 운 영	4,179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29조)
	·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1,120	·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안 제22조)
	· 미국 OTC 제조소 등록 지원	1,300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29조)
	· AI활용 수출 통합 정보 제공 및 관리	1,000	·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29조) ·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31조)
	· 해외 물류 기지 구축	9,000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29조)
	·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 케팅	1,500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29조)
	· 원료 국산화	4,300	· 화장품 원료·용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27조)
	· 해외 판매장 및 팝업부스	5,400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29조)
	· 남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2,192	·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안 제22조)
	· 오송 글로벌 K-뷰티 아카데미 설립	3,851	· 전문인력 양성 (안 제25조)
	·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 화 기반 구축	4,820	·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 (안 제22조)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463	· 전문인력 양성 (안 제25조)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R&D)	·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R&D)	7,535	·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21조)

자료: 보건복지부